

# 2004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 2003. 11. 20.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2004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2004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6개기금 2,82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8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나.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기금명	2004년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Δ)
합계	2,826,265	2,428,327	397,938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8,277	109,784	Δ1,507
평창군노인복지기금	985,558	889,971	95,587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	602,095	565,787	36,308
평창군여성발전기금	376,000	210,000	166,000
평창군재해대책기금	597,081	520,638	76,443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57,254	132,147	25,107

##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 관제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度開始 50日 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新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提出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① 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積省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며, 出納閉鎖後 80日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管理와 運用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所屬公務員에게 委任하거나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115條 및 會計關係職員등의 責任에 관한法律을 準用한다.